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6

발의연월일: 2020. 11. 26.

발 의 자:임이자·김영식·권명호

金炳旭・송언석・추경호

한무경 · 김성원 · 이명수

강기윤 • 윤영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 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 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 설).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 2.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4.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
		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
		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
		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
		<u>납액보다 부족한 경우</u>
		2.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
		<u>성된 경우</u>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
		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
		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
		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
		이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

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